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8회 임시회(2020. 5.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38
----------	-------

2020. 5. 20.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정혜경 의원 외 4인
- 나. 제 안 일 : 2020. 5. 13.
- 다. 회 부 일 : 2020. 5. 13.

2. 제안이유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2016.1.25.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제명 변경(안 제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2018. 11. 25. 제정된 사항으로 제명을 변경 하여 개정(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대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 입법예고 : 2020. 5. 13.~ 5. 17.(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으로 법령의 정합성을 이루기 위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의 상위법령 제명변경은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령 체계를 맞추고자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또한, 안 제2조의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정합성을 갖추었음.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문제점이 없음.

[관 계 법 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8회 임시회(2020. 5.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39
----------	-------

2020. 5. 20.
전문위원 신준호

1. 폐지경위

- 가. 제 안 자 : 정혜경 의원 외 4 인
- 나. 제 안 일 : 2020. 5. 13.
- 다. 회 부 일 : 2020. 5. 13.

2. 폐지이유

기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된 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어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폐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폐지 배경

- 상위법령에서 국가위임사무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맞는 법령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기 위함.

나. 주요 조문 검토 및 종합의견

- 기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개정(2016.1.27. 개정, 2017.1.28. 시행)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개정(2017.10.24. 개정, 2018.10.25. 시행)으로 위원회의 명칭 등 관련 용어가 수정되었으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본 조례는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필요시 내부규정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관 계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